

주택경매 예정 공지

1. 개요

항상 비앤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.
당사는 『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』 제8조에 따라 주택경매 예정통지를 하였으나, 주택경매 예정통지서가 2회 반송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통지가 불가하여 동법 제 8조 5항 법률에 따라 주택경매 예정통지를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그 통지를 갈음하고자 합니다.

2. 공지 내용

관련 계약번호	첨부파일 주택 경매신청 대상 리스트 참조
경매 신청 대상주택	첨부파일 주택 경매신청 대상 주택 리스트 참조
경매 신청 예정일	홈페이지 게시일 +10영업일 이후
채무조정 요건과 요청절차 방법	차량(바이크) 매각 후 채무조정 요청서 제출 (상세내용 홈페이지 참고)
아울러, 『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』에 따른 채무조정절차, 『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』에 따른 회생, 간이회생, 개인회생, 파산, 면책절차 등 채무조정제도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 연체금액 및 기간에 따라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가 등록 및 공유될 수 있으며, 연체등록정보가 해제되더라도 연체관련 기록이 최대 1년 동안 남아있을 수 있어 금융거래에 불편이 초래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 또한 위 경매신청 예정일까지 『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』 제35조에 따라 채무조정을 요청한 경우 그 채무조정의 절차가 끝나기 전까지 주택경매 신청은 진행되지 않습니다. 다만, 다른 채권자가 해당 주택에 대하여 「민사집행법」에 따른 강제집행을 법원에 신청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시 주택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.	

3. 주택경매 신청 대상 리스트

계약번호	고객명	채무구분	경매신청 대상 주택	1차 발송일자	2차 발송일자	결과
2202-006224-4-001	황*성	계약자	경기도 의정부시 문화로 38, ****동****호(산곡동, 고산 수자인 디에스티지 아트포레)	2026-09-02	2026-09-10	미배달